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기 타	☐ 일반 20% ☐ 12%감경대상자 ☐ 8%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10%감경대상자		
제공자 (을)	시설명	행복한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성명	박 홍 정 (인)	연락처	043) 255-3367
	주 소	충북 청주시 용암북로 124-1 4층, 5층, 7층, 8층, 9층, 10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인정유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_____ 원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일수로 계산되어지며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단,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 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④ **요양비가 3개월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 지속 미납될 시 독촉 문자 발송 및 납부 요청서류가 발송되며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퇴소를 요구하거나 밀린 요양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행복한 요양원의 계좌로 납부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병원진료 등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비용 전액
- 개인 건강관련 구매된 약품류 전체
- 개인 특별간식(뉴케어), 연하곤란시 점도증진제[연하케어제] 사용시 본인부담

◇ 시설급여 (1일, 2.1:1 인력배치기준)

2025년 1월 개정			1등급	2등급	3~5등급
요 양 급 여	노인요양시설		90,450	83,910	79,240
	본 인 부 담	일반(20%)	18,090	16,782	15,848
		감경(12%)	10,854	10,069	9,509
		감경(8%)	7,236	6,713	6,339
		기초수급권자	0원	0원	0원
비 급 여	식재료비 x 3회		매식 3,000 x 3회		9,000
	간식비(2회)		1일 500 x 2회		1,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경감대상자	12%	-
	8%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 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2.1:1 인력배치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총 계(20%)		842,700	803,460	775,440
총 계(12%)		625,620	602,076	585,264
총 계(8%)		517,080	501,384	490,176
기초수급권자(0%)		0원	0원	0원
요양보험 부담비용	일반(20%)소계	542,700	503,460	475,440
	감경(12%)소계	325,620	302,076	285,264
	감경(8%)소계	217,080	201,384	190,176
	기초수급권자(0%)	0원	0원	0원
개인 부담비용	소 계	300,000원		
	식사재료비/간식비			
	이/미용료	-		

	입금계좌	예금주
요양비용	수협 0103-4505-9260	행복한 요양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수급자 또는 보호자 신청)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갑병의 퇴소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한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사전예약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119 , 가까운병원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간식: 오전/오후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영양실의 배정 】 ‘갑’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인지/정서/치매/보행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 11월 2024년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시설장 박 홍 정



‘병’ 대리인(보호자) (인)

행복한 영양원

신체제재 사용 동의서

성명(이용자)		성 별		나 이	
생 년 월 일		적용일시	20 년 월 일		

1. 신체제재 사유

- ① 불안정한 자세나 움직임으로 낙상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
- ② 피부를 긁어 대상자의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함
- ③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제한 및 예방함
- ④ 불안정한 대상자의 Tube, Catheter 등 치료적 중요 부착물을 뽑지 못하게 하여 대상자의 생명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정과 적절한 의료 행위 유지를 행하기 위함(절박성)
- ⑤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약물투여나 의료행위가 어려운 경우(일시성)
- ⑥ 낙상예방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침대 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비대체성)
*** 비대체성은 입소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 기타 이유:

2. 신체제재 사용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한 대상 기록

☐ 보호자: 관계 :

☐ 설명방법: 직접() 전화() 방문시() *보호자상담->억제동의->억제시행

3. 신체제재의 방법

■ 휠체어 안전벨트 (Y보호대) ☐ 식판

■ 침대 난간올리기 ☐ 손목, 발목제재 ☐ 손 장갑 ☐ 가슴억제 ☐ 우주복

4. 신체제재 사용시간 기록(전산기록 ECM)

침대 난간 올림이나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Y보호대, 휠체어 식판, 우주복은 기록 안함.
 2시간 마다(또는 4시간 마다)10분 휴식, 제재 후 상태 기록, 서명 000 기록

본인은 신체제재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재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이해하였으며 신체제재 사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확인)

 관 계 :

행복한 요양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시군구/공단/병원/보건소 등

수집 대상자 정보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장기요양급여 관련정보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질병관련 이력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 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관계 :

행복한 요양원

CCTV 촬영 동의서

(수급자, 보호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상기 수급자(보호자)는 행복한 요양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 CCTV촬영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위의 수급자(보호자)는 행복한 요양원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와 노인학대 예방적 차원**으로 설치된 CCTV촬영에 동의를 CCTV 설치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동의합니다.
2. 단, 촬영된 영상자료는 본인 또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무단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CCTV설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1) 정보주체에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 년 월 일

보 호 자 : (인)

관계 :

행복한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 동의서

구분		장기요양급여내용
장기요양제공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머리감기기, 머리미용, 손씻기, 발관리, 손발톱깎기, 옷 갈아 입히기, 부분목욕,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욕창예방 도구사용, 이동도움(일어나기, 앉기, 휠체어이동), 화장실 이용 도움, 기저귀 교체,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시설환경관리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청소, 세탁물관리, 주변정리
	개인활동지원	산책 및 외출 동행, 병원진료 동행, 금전관리, 일상생활지원, 개인의복, 옷장 관리, 일상업무지원, 각종 정보 안내.
	정서지원	말벗, 격려와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고충상담, 산책지원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프로그램	재활레크레이션, 음악감상, 장구민요, 책읽기, 인형극, 동화구연, 생신잔치
	행사	문화예술단, 기타 비정기적인 행사 참여
	종교활동	종교는 자유입니다.
	건강 및 간호관리	- 관찰 및 측정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관절 오그라들예방, 투약관리 [먹는약투여및도움. 확인, 바르는약도포및좌약삽입, 자가주사교육및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및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외등)] ,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완화를위한훈련제공) - 간호관리 :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L-tube) 교환등, 통증관리, 배설관리 [소변배출(도뇨관)관리, 방광간호, 회음부간호, 요루(요도셋길)간호, 장루(창자셋길)간호, 배설간호등] , 당뇨관리(당뇨발간호, 상처관리등) 호흡기간호(호흡인간호, 기관절개관리, 산소요법관리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예방등) - 응급서비스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사례관리	배회, 정신행동증상관리, 적절한 대처, 다양한 욕구, 다양한 방법 제시, 사례회의를 거쳐 행동 완화, 안정유지
	영양	영양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 각 영양상태에 따른 환자식, 개별식으로 제공, 비급여 항목 설명
	물리치료	통증관리, 온열, 전기치료, 재활치료, 관절운동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단, 수급자의 건강과 의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대체프로그램 진행

* 행복한 요양원에서는 급여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급여제공을 위한 급여계획을 세워 보호자(가족)에게 입소 후 30일 내에 우편 발송합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이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계획에 동의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공단 통보 후 보호자 서명)

20 21 22 23

보호자 : (인)

관계 :

행복한 요양원

교육 자료제공 및 부분 수령 확인서

□주요 자료제공

1. 급여제공교육 및 업무범위, 기본내역 주요내용

<수급자(보호자) 제공 교육자료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학대유형	신체적학대, 정신적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
노인학대예방방법	노인학대 예방법에 대한 교육
노인학대대응방법	노인학대 대응방법 및 신고기관 안내
노인학대프로그램	언어, 정서적학대, 재정적 학대와 노인복지법 등
욕창예방교육 및 관리지침	
기본지침	욕창예방에 대한 우리기관 기본지침
욕창의 원인	압력, 마찰, 영양실조, 배설물, 감각지각 장애
욕창부위	엉덩이, 견갑골, 팔꿈치, 엉치등뼈, 발뒤꿈치가슴뼈
욕창예방방법	욕창예방프로그램 및 방법에 대한 교육진행
욕창발생시 처치법	욕창어르신에 대한 처치법 및 관리법
낙상예방교육 및 관리지침	
낙상의원인	화재인지, 색깔특성 인식, 골반, 골절밀도 약화
낙상예방 방법	운동실시, 안전한 환경, 욕실바닥, 미끄럼방지 등
낙상예방프로그램	근력, 지구력, 낙상시 응급대처훈련
발생시 응급조치법	낙상발생시 조치법 및 긴급연락안내

2. 배상책임보험의 확인 및 안내

고령의 노인들은 골다공증 등 신체적인 조건이 많이 쇠퇴되어 있으므로,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골절, 타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특성상 24시간 한분만을 예의 주시 할 수 없기에,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써 어르신의 사고를 보호해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어르신의 과실여부는 발생될 수 있고, 더욱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그에 따른 개인적인 보험을 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 확인

수급자(보호자)은 본 서면에 의해,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입소시설에 관련된 위 교육 자료를 제공 받고 설명 받았으며, 개인정보의 취급에 준하여 교육을 받았음에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제 공 자 : 박홍정

수 급 자 : (인)

보 호 자 : (인)



행복한 요양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설명 동의서

성명 (이용자)		생년월일	
계약기간		등급	

▶시설급여(1일, 2.1:1 인력배치기준)

2025년 1월 개정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 급 여	노인요양시설(1일수가)		90,450	83,910	79,240
	본인부담	일반(20%)	18,090	16,782	15,848
		감경(12%)	10,854	10,069	9,509
		감경(8%)	7,236	6,713	6,339
		기초수급권자	0원	0원	0원
비 급 여	본인 부담	식사 X 3회 (간식 2회 포함)	매식 3,000 X 3회 간식 500X2회		10,000
		이/미용료 등	-		

▶ 세부내역(30일, 2.1:1 인력배치기준)

2025년 1월 개정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 급 여	본인부담	일반(20%)	542,700	503,460	475,440
		감경(12%)	325,620	302,076	285,264
		감경(8%)	217,080	201,384	190,176
		기초수급권자	0원	0원	0원
비 급 여	본인부담	식 사 X 3회 (간식 2회 포함)	300,000		
			-		
총계(20%)			842,700	803,460	775,440
총계(12%)			625,620	602,076	585,264
총계(8%)			517,080	501,384	490,176

▶ 입원·외박 시 급여내역(10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본인부담금의 50% 적용기준)

2025년 1월 개정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 급 여	노인요양시설(1일수가)		90,450	83,910	79,240
	본인부담	일반(20%)	9,045	8,391	7,924
		감경(12%)	5,427	5,035	4,754
		감경(8%)	3,618	3,356	3,170
		기초수급권자	0원	0원	0원

납부 계좌		
요양비용	수협 0103-4505-9260	행복한 요양원

상기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월 비용납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 호 자 : (인)

관계 :

행복한 요양원